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69116 판결 [이행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태진

피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변론 종결 2018. 7. 4.

판결 선고 2018.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B 영농조합법인(이하 'B'라 한다)에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B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양곡)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2016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2011. 4. 29. B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피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보증금액 2억 7천만 원, 보증기간 2011. 4. 29.부터 2012.4. 29.까지'로 정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보증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2. 4. 30.부터 2016. 4. 29.까지 매년 1년단위로 B와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이하 각 보증서는 발행일에 따라 '2010. ○. ○.자 보증서'로 특정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

○ 2012.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주채무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개별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

○ 2013.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3. 4. 30.부터 2014. 4. 30.까지

○ 2014.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 특약내용 : 기은 C(2013. 4. 30.자 보증서 지칭) 회수조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2015.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5. 4. 30.부터 2016. 4. 29.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2016. 4. 29.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6. 4. 29.부터 2017. 4. 29.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라. B는 2014. 10. 1.부터 2016. 1. 7.까지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2. 30. 기준 외상 물품대금이 999,962,770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 보증금 2억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위 물품대금이 2016. 4. 29.자 보증서의 보증기간인 2016. 4. 29.부터 2017. 4. 29.까지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한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의 물품대금 채무는 2014. 4. 30.자, 2015. 4. 30.자 각 보증서의 합산 보증기간(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 중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은 구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갱신보증에 해당하므로 2016. 4. 29.자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30.자 및 2015. 4. 30.자 각 보증서는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기간 내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보증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고, 또 이 사건 각 보증은 갱신보증이 아니고 원고 주장의 B의 물품대금 채무는 2016. 4. 29.자 보증서의 보증기간인 2016. 4. 29.부터 2017. 4. 29.까지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4. 4. 30.자 및 2015. 4. 30.자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

위 각 보증서상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위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이 갱신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판결).

앞서의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문서인 2016. 4. 29.자 보증서에는 보증채무범위를 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구 보증서의 잔존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통상 보증서 특약사항에 '구 보증서(보증서 번호 명기) 피보증채무 승계'라고 기재하는데이 사건 각 보증서에는 기존 보증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2014. 4. 30.자 보증서에는 특약으로 '구 보증서(2013. 4. 30.자 보증서) 회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구 보증서 실물을 회수한다는 의미이고, B가 2014. 4. 29. 피고에 제출한 지급보증신청서에도 기존 보증채무를 승계해 달라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B는 피고에 매년 지급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액과 보증기간(1년)은 동일하였으나 보증채무의 범위는 B의 선택에 따라 달라졌으며, 피고는 별도의 보증심사를 통해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이 사건 보증 약관 제2조 제2호는 지급보증을 '신청인이 보증처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이 피고가 기존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기간 중 발생한 보증채무도 승계하는 갹신보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2016. 4.29.자 보증서에 기하여 구 보증서의 보증기간 중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고는 '구 보증서의 보증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이 보증기간경과 후 2개월에 불과한 것'은 통상의 보증계약에 비하여 원고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를 설명하거나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자세히 기재하였어야 하고, 설령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제3조 제1항),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제3조 제3항)가 있는데 보증책임의 범위와 보증기간에 관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기재하거나 원고 및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B에 설명하지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과 보증채무범위, 이행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 약관에도, 지급보증이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의미한다는 것(제2조 제1항 제2호)과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의 제한과 보증채무의 소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제6, 7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사항을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위와 같이 보증서와 보증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던 사항의 경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서발행기관은 보증서를 발행한 이후 발생한 피보증채무에 관하여만 그 보증한도의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다. 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최초 계약 후 B가 매년 지급보증거래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B 제출의 지급보증거래 신청서는 피보증채무의 내용을 특정채무와 근보증 중 택일하고, 근보증 중에서도 ①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② 보증기간 중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③ 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중에 B가 택일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 위 신청서에는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행청구기간에 관한 내용도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핵심내용인 피보증채무의 내용과 그 청구기간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 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강하영, 판사 신세희